

소방청 훈령 제211호(시행 2025. 12. 31.)

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보유하는 소방장비(이하 "소방장비"라 한다)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 활동 시 원활한 구조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하며, 사용 용도별로 기동장비·화재진압장비·구조장비·구급장비·정보통신장비·측정장비·보호장비 및 보조장비로 구분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훈령은 중앙119구조본부, 119특수구조대 및 119화학구조센터에 적용한다.

제4조(보유기준)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5조(재검토기한)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